

#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1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 스포츠시설의 확충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타 시.군.구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, 동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동 전개로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군수의 책무

-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(안 제3조)

### 나.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의 수립

-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(안 제4조)

### 다. 전지훈련선수단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

- 군수 소속하에 전지훈련선수단유치지원위원회 설치(안 제5조)

### 라. 위원회 구성

- 위원회는 평창군체육진흥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된 평창군체육진흥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(안 제6조)

### 마. 위원회의 기능

-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심의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련법령 : 붙임

###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“붙임”

### 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
### 라. 사전규제검토 : 기획감사실-8520(2011.10.25) 해당없음

### 마. 부패영향평가 결과 : 기획감사실-8535(2011.10.26) 원안동의

### 바. 입법예고 : 2011. 11. 3~11. 23.(21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

### 사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#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평창군의 스포츠산업·관광산업 육성,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‘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’(이하 “전지훈련 선수단”이라 한다)이란 보다 나은 체력, 기술의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·외 학생(초,중,고,대학) 및 실업팀, 프로팀, 생활체육단체, 동호인 등이 평창군내에서 각종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훈련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4조(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의 수립)**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(이하 “유치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
2. 전년도 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
3. 전지훈련 유치 및 교통, 숙박,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
4.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

**제5조(전지훈련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)**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전지훈련유치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6조(위원회 구성)** 위원회는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로 한다.

**제7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전지훈련시설 운영·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
3.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
4.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평창군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

**제9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 임기는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 제7조를 준용한다.

**제10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(안 제3조)

## 2. 미첨부 사유

-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확정 전 재정소요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음

### 【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】

제5조(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)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3. 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

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문화체육과 과장 최 원 규
연락처	(033) 330 - 2250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### 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3조(체육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### □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

제3조(국민체육진흥 시책) ① 「국민체육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(이하 "기본시책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생활체육의 진흥
2.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·육성
3.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·보수 및 관리
4. 체육과학의 진흥
5.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·지원
6.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